

선제적 대응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(Proactive Enforcement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)

함병호*

고용노동부

(hamkman@naver.com*)

화학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위험을 제거·통제하고 비상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.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공정안전관리(PSM: Process Safety Management)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, PSM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과 화학사고 위험징후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.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향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.